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832호)

2026. 0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 문 위 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꿀벌 질병의 정의 및 꿀벌 질병에 특화된 관리대책·방역절차 신설	2
2. 꿀벌 질병에 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규정 마련	14
3. 꿀벌 질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신설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송옥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7. 8.
3. 회 부 일 : 2026. 7.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복되는 월동봉군 폐사, 응애 피해, 낭충봉아부패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꿀벌 질병에 대한 예찰·신고·검사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지자체·민간검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실상의 꿀벌 질병 방역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현행 제도는 예찰, 신고, 검사, 병성감정, 정보시스템 운영의 일반적 틀을 두고 있으나, 꿀벌 질병에 대한 특화된 의무와 협업 구조를 명확히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이에 꿀벌 질병의 정의 및 대상 질병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두고, 꿀벌을 사육하는 자에게 예찰·신고 의무를 부여함.

또한 국가·지자체가 꿀벌 질병의 상시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하도록 하며,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현장조사 근거를 명확히 함.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의 검사·병성감정 업무 수행 주체로 포섭할 수 있도록 지정·협업 근거를 마련함.

특히 꿀벌 질병 정보의 수집·분석·공유를 위한 별도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상 필요한 경우 이동제한, 소독, 방제, 예찰 강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현행법은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이 미비해 양봉농가가 자발적으로 감염 봉군을 신고하고 살처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꿀벌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질병의 은폐와 확산을 막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Ⅲ. 검토의견

1. 꿀벌 질병의 정의 및 꿀벌 질병에 특화된 관리대책·방역절차 신설

개정안은 꿀벌 질병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꿀벌 질병의 예찰·신고·검사·정보수집·확산방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며, 꿀벌 질병 신고를 위한 전용 신고체계와 신고의무, 검사·병성감정 수행기관 지정, 예찰·역학조사, 방역조치 등 꿀벌 특화 방역절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최근 국내 양봉업계에서는 월동봉군의 대규모 폐사가 반복되면서 꿀벌 소실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2021년 이후 연도별 피해율이 16~25%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꿀벌 질병에 특화된 예찰·신고·검사 체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꿀벌 질병 중 일부는 이미 현행법상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꿀벌 질병"이라는 별도 정의를 신설할 경우 동

일 질병이 두 범주에 병존하여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낭충봉아부패병은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부저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미 신고, 병성감정,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 현행법상 가축전염병 관리 절차의 적용을 받고 있음.

【 대표적인 꿀벌 질병 현황 】

질병명	병원체 유형	특성	현행법상 지위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	꿀벌 애벌레가 번데기로 탈바꿈하지 못하고 물주머니처럼 변해 말라 폐사하는 바이러스성 질환. 토종벌(한봉)에서 특히 피해가 많음	제2종 가축전염병
부저병	세균	미국부저병과 유럽부저병이 있으며 애벌레가 갈색으로 변하여 부패하여 폐사하는 것이 특징	제3종 가축전염병
응애 ¹⁾	기생충	꿀벌 성충·유충에 기생하여 체액을 흡취하고 각종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병해충	-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꿀벌 질병" 개념을 신설하면서 이와 연계하여 신고, 검사기관 지정, 역학조사, 방역조치 등을 별도로 규정하게 되면 이들 질병은 결과적으로 "가축전염병"과 "꿀벌 질병

1) 응애는 현재 기준으로 가축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때문에 "꿀벌 질병"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신설하기보다는 응애를 현행 가축전염병의 범주(제1종~제3종)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먼저 논의하는 것이 순서에 맞을 것으로 사료됨. 제21대 국회에서도 꿀벌응애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려는 개정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20336)이 발의된 바 있으나, 응애가 구제제 사용으로 관리 가능한 외부 기생충이고, 진드기라는 생물학적 특성상 살처분·이동제한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가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후 해당 개정안은 임기만료폐기되었음.

"이라는 두 범주에 동시에 해당하여 두 갈래의 절차가 병존하는 상태에 놓이게 됨.

【 개정안과 현행 법령상 주요 방역 관련 조치 비교 】

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법령상 주요 조치	근거법령
꿀벌질병 전용 신고체계 신설 및·신고의무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이 신고대상 가축(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결과 등이 있는 가축)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	법 제11조
꿀벌 질병 검사 또는 병성감정 수행을 위한 민간검사기관 지정	국립가축방역기관장,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민간 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 가능	법 제12조
봉군, 이동경로, 채밀장, 화분매개용 시설, 밀원지 등에 대하여 예찰 및 역학조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신속한 방역조치업무 수행을 위한 예찰 실시 가능	시행규칙 제3조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지체없이 역학조사 실시하도록 의무화	법 제13조
봉군의 이동제한, 소독, 방제, 살충관리, 봉군 재배치 제한, 검사명령 등 방역조치 실시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의 격리, 이동 제한, 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사육제한 명령 가능	법 제19조
	일정 규모 이상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정기적 소독 실시 의무화	법 제17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병해충 방제 등을 포함한 방역기준 준수 의무 부과	법 제17조의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검사·주사·투약 등을 명할 수 있음	법 제15조

이 경우 동일한 질병 의심 상황에 대해 양봉농가와 방역기관이 어느 조항·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혼동할 소지가 있어, 규율의 공백을 메우기보다 동일 사안에 두 절차가 경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나아가 현행법상 가축전염병은 축종을 불문하고 통일된 분류 체계(제1종~제3종)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바, 여러 가축전염병 중 꿀벌 관련 질병만을 별도의 범주로 떼어내어 정의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둘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신설되는 사항들의 경우 현행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과 상당 부분 중복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은 꿀벌 질병의 예찰, 신고, 검사 등과 꿀벌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구축, 꿀벌 질병의 발생상황 분석과 확산방지에 필요한 정보체계 구축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수립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²⁾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음.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
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
8. 살처분·소각·매몰·화학적 처리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
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화학적 처리에 직접 관여한 사람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
10.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12.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그러나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체계 구축,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등을 이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기존 규정과 사실상 중첩될 우려가 있음.

【 개정안과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 비교 】

개정안		현행법	
제12호	꿀벌 질병의 예방, 신고, 검사, 정보수집 및 확산방지에 관한 사항	제1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제6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제13호	꿀벌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구축	제1호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체계 구축
제14호	꿀벌 질병의 검사 및 병성감정 체계 구축	제2호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제15호	꿀벌 질병의 발생상황 분석과 확산방지에 필요한 정보체계 구축	제6호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

또한, 현행법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은 이미 모든 축종의 가축전염병을 포괄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어, 그 안에서 꿀벌 관련 사항 역시 그 체계 안에서 함께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축종별로 대책 포함사항을 세분하여 별도로 열거하는 방식은 계획체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꿀벌 질병과 관련한 사항을 대책에 별도로 추가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병성감정 및 민간 가축

병성감정실시기관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어 현행 제도상으로도 꿀벌 질병 검사항목만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개정안은 지정권자·지정기준의 위임법령·제재수단이 현행 규정과 충돌될 뿐 아니라 국가·지방정부 방역기관을 지정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민간기관과 동렬로 격하되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꿀벌 등을 포함한 가축과 가축전염병에 대한 정의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가축전염병 대상 검사·신고·병성감정 관련 사항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정 가축(꿀벌)만을 위한 별도 조문 신설은 입법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힘.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2조의2(꿀벌 질병의 정의 등)</u> ① 이 법에서 “꿀벌 질병”이란 꿀벌의 생존, 번식 또는 봉군 유지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감염성 질환, 기생충성 질환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꿀벌 질병의 종류, 진단기준, 의심사례의 판단기준 및 방역상 필요한 매개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장·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 ----- ----- ----- ----- ----- ----- ----- -----

관리대책(이하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 ⑥ (생략)

<신설>

<신설>

-----.

1. ~ 11. (현행과 같음)

12. 꿀벌 질병의 예찰, 신고, 검사, 정보수집 및 확산방지에 관한 사항

13. 꿀벌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신고체계 구축

14. 꿀벌 질병의 검사 및 병성 감정 체계 구축

15. 꿀벌 질병의 발생상황 분석과 확산방지에 필요한 정보체계 구축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꿀벌 질병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전용 신고체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⑧ 꿀벌의 소유자등은 봉군의 집단폐사, 월동봉군의 급격한 약화, 응애의 급증, 낭충봉아부패병 또는 그 밖의 꿀벌 질병

<u><신 설></u>	<u>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u> <u>⑨ 제8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 방법, 기한 및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제12조(병성감정 등) ① ~ ⑦ (생 략) <u><신 설></u>	제12조(병성감정 및 조사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질병의 신속한 진단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검사기관을 꿀벌 질병 검사 또는 병성감정 업무의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u>
<u><신 설></u>	<u>⑨ 제8항에 따른 민간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검사범위, 품질관리, 보고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⑩ 제8항에 따른 검사결과는 지체 없이 방역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제13조(역학조사) ① ~ ⑨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역학조사 및 예찰)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 봉군, 이동경로, 채밀장, 화분매개용 시설, 밀원지 및 그 밖에 꿀벌의 이동·접촉과 관련된 장소에 대하여 예찰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⑪ 꿀벌 질병의 예찰 대상, 조사방법, 시료채취, 환경조사 및 결과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7(꿀벌 질병 방역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봉군의 이동제한, 소독, 방제, 살충관리, 봉군 재배치 제한, 검사명령 및 그 밖의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절차, 기간 및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꿀벌 질병의 방역조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꿀벌 질병에 관한 중점방역관리지구 규정 마련

개정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꿀벌 질병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지구에서 꿀벌을 사육하거나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소독설비 등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꿀벌 질병과 관련된 지역(안 제3조의4제9항)” 또는 “꿀벌 질병과 관련된 중점방역관리지구(안 제3조의4제10항)”라는 표현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함.

현행 중점방역관리지구 제도³⁾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꿀벌 질병 자체를 이유로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 제1종 가축전염병을 이유로 이미 지정된 기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꿀벌 사육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음.

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현재 꿀벌 관련 질병 중 낭충봉아부패병은 제2종, 부저병은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제1종 가축전염병이 없으므로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후자의 경우 지구 지정의 근거인 제1종 가축전염병과 그 안에서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인 꿀벌 질병 대응이 서로 무관하여 지구 지정 취지와 신설되는 조치계획·기준 사이에 실질적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절차와 시설·장비 기준 부과가 현행법령과 상당 부분 중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국가가 임상·환경 모니터링 검사에 기반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에 대한 맞춤형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미 중점방역관리지구에 대하여 국가가 임상·환경 모니터링 검사에 기반한 조치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순차적으로 관할 지구의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시행규칙은 축종을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꿀벌도 이미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법령에 있는 제도

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음.

다음으로 개정안은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쫓별을 사육하거나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소독설비, 출입통제, 방충·방제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점방역관리 지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제한·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에 반해 개정안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기준은 긴급한 확산방지를 위한 강화조치라기보다는 평상시 필요한 장비 수준을 갖추도록 관리하는 성격을 띄어 중점방역관리 지구라는 규제수단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보기 어려움.

또한, 현행법에는 이미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제17조), 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제17조의2),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제19조) 등 가축의 방역에 관한 일반조항이 존재하므로, 쫓별 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설비·출입통제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 중점방역관리 지구라는 지역 단위 규제수단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방역조항 체계 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개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꿀벌 질병 관리를 위해 농가 예찰, 응애 집중 발생기간 교육·홍보, 농가 컨설팅 및 약품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2021년 이후 낭충봉아부패병 등의 발생이 감소 추세인 점, 이동양봉 등에 따라 사육공간이 유동적인 점, 제1종 가축전염병 대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치명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꿀벌 질병 대상 중점 방역관리지구 지정은 방역 실효성이 높지 않아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행	개정안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 ⑦ (생략) <u><신설></u> <u><신설></u>	제3조의4(중점방역관리지구)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 및 꿀벌 질병 매개체에 대한 임상·환경 모니터링 검사와 그 밖에 꿀벌 질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u> ⑨ <u>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꿀벌 질병과 관련된 지역에 대하여 꿀벌 사육농가, 채밀장, 이동봉군 집적지역, 밀원지 주변 및 방제취약지에 대</u>

<u><신 설></u>	<u>한 맞춤형 조치계획을 수립·</u> <u>시행해야 한다.</u> <u>⑩ 꿀벌 질병과 관련된 중점방</u> <u>역관리지구에서 꿀벌 사육 또</u> <u>는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u> <u>소독설비, 출입통제, 방충·방</u> <u>제시설, 기록보존체계 등 농림</u> <u>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u> <u>·장비를 갖추어야 한다.</u>
---------------------------	---

3. 꿀벌 질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신설(안 제48조)

개정안은 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 하거나 폐기한 봉군, 여왕벌, 벌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 시설의 소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제1항7호 신설).

월동봉군 집단폐사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감염 봉군의 은폐·미 신고를 방지하고 양봉농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이 보상대상으로 규정하는 "살처분"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함.

현행법의 보상금 지급의 근거 규정(제48조)을 보면, 보상대상이 되는 살처분·손실이 어느 조항에 근거한 조치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4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 】

구분	보상금 지급 대상
제1호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제2호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투약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가축(사산되거나 유산된 가축의 태아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3호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호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간에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각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가 조정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소유자
제5호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병성감정 실시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이동이 제한된 자
제6호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의 소유자

그런데 개정안은 살처분의 근거 조항을 밝히지 않은 채 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하거나 폐기한 봉군 등의 소유자를 보상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근거 조항이 불분명함.

나아가 해당 조항이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되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면 꿀벌은 현행법상 이미 가축에 해당하므로 현재도 기존 법률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 별도 조항을 신설할 실익이 크지 않고, 개정안에 따라 신설하는 꿀벌 방역조치 조항에 따른 살처분을 상정한 것이라면 해당 방역조치 조항에서는

보상의 전제가 되는 살처분 명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둘째, 살처분 보상금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살처분 보상금 대상 확대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낭충봉아부패병·부저병 등 주요 꿀벌 질병은 최근 5년간(2021년 204호·5,929봉군 → 2025년 42호·990봉군) 발생 건수와 피해 봉군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신규 재정 소요를 수반하면서까지 보상금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정도의 방역상 긴급성이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임.

따라서 꿀벌 질병이 기존 보상금 대상 질병과 견줄 만한 수준의 위험성·피해규모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현재 꿀벌 질병 발생 통계 등을 포함한 통계자료 또는 연구결과에 기반한 심도 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종·제2종 가축전염병 중 공중보건상 위험이 있어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일부 질병에 대해서만 살처분 명령 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낭충봉아부패병 등 꿀벌 질병은 2021년 이후 발생이 감소하고 있어 살처분 보상금 지급 대상 포함 여부는 발생 빈도·피해 수준 등 질병

별 특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검사기관 지정, 꿀벌질병관리 기본계획 등 유사한 취지를 담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826,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이 함께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두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을 보임.

마지막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⁴⁾

4)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 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

현행	개정안
제48조(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48조(보상금 등)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꿀벌 질병의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살처분하거나 폐기한 봉군, 여왕벌, 벌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시설의 소유자</u>
② ~ ⑦ (생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문의처

02)6788-5425

참 고

2021년~2026년 월동 꿀벌 피해 현황

□ 연도별 평균 감소율 및 지역별 편차

○ '23년부터 지방농촌기관을 통해 농촌진흥청 자체조사

* 조사 근거 및 방법 : 꿀벌 피해조사방법 및 정책 해외사례 조사분석('23, KREI)

연도	평균 피해율(%) (착봉율)	지역편차 (최고-최저)	비 고 (조사수행기관, 시기)
'22/'23	17.5	33.1	농촌진흥기관('22.12월, '23.3월)
'23/'24	16.0	30.0	농촌진흥기관('23.12월, '24.3월)
'24/'25	24.9	32.7	농촌진흥기관('24.12월, '25.3월)
'25/'26	24.6	-	농촌진흥기관('25.12월, '26.3월)

□ 피해율 증감 원인 분석 및 농가 교육지원

○ ('22/'23) 월동 전 소실이 심한 상태에서 월동을 시작하였으나, 철저한 꿀벌응애 방제를 통해 피해율 감소한 것으로 추정

○ ('23/'24) 적극적인 꿀벌응애 방제와 교육을 통한 월동시기 조정 (10→11월) 및 적합 장소 선정으로 피해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

○ ('24/'25) 월동 전·후 이상기상에 따른 면역력 약화와 월동봉군 관리(산란중지, 벌수조정 등) 미흡으로 전년 대비 피해율 다소 증가

* 월동전 고온('24.7~9월) : 35.5°C(전년대비 2.3°C ↑), 폭염일수 전년대비 8일↑

○ ('25/'26) 기록적 폭염, 월동전 고온·저온 반복 등 기상여건 불리에도 적극적인 꿀벌응애 방제, 적기 먹이공급, 월동시기 조정으로 감소율 유지

* 이상고온 발생('25.7~8월): 25.2일(전년 22.7), 일교차 10°C이상('25.11월): 19.7일(전년 17.4)

* 조사농가별 월동시기는 '25.11.2.(내륙산간) ~ '26.1.1.(남부해안)까지 다양

*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시설,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등